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11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북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주도 및 경쟁력 강화
- 경북 청년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역정착유도 및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주력산업분야의 중소기업

- 모집인원: 최대 210명(13개 시·군)

합 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210명	21	57	1	5	0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6	0	7	1	9	1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6	3	1	6	22	22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39	1	1	1		

☐ 지원내용

가.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기 간) 2022년 3월 ~ 2024년 2월(최대 24개월)

(인 원) 기업 당 최대 3명

(지원금) 실수령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월)

※ 동일인이 여러 기업 보유 시, 대표자 기준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

나. 참여청년 지역정착지원금 지원

(기 간) 2022년 3월 ~ 2024년 2월(최대 24개월)

(금 액) 최대 월 10만원 참여청년 직접지원

※ 참여청년이 2년 만근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

- '24. 3월 ~ '25. 2월, 분기별 250만원 4회 지급(최대 1,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등 정부지원 포함된 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다. 청년 교육지원 : 직무교육(기본 · 심화교육 등), 네트워킹(견학 등)

□ 지원방법 : 월 또는 분기 지급(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절차

□ 기업이 2022. 1. 12. 이후 청년을 채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평가(적격 및 정량)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해서 지원 예정

※ 평가 후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년채용에 유의 필요

3 자격조건 및 선정방법

□ 자격조건

○ 참여기업 자격조건

- 경북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중 경상북도 주력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기준일(2022. 1. 12.)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사업자 4대보험)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산 업 명	주요업종	비 고
지능형디지털기기	의료용 기기, 무선통신장비, 기타 전자부품제조 등	붙임1 참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 주형 및 금형제조 등	
친환경융합섬유소재	화학섬유 직물, 플라스틱 제품 제조등	
라이프케어뷰티	화장품, 식료품 제조, 건강 기능식품 제조등	

※ 붙임1의 업종 분류표에 없는 경우 참여기업이 주력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 검토 후 추가 될 수 있음

○ 참여청년 자격조건

- 만18세~ 만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2022.1.1.기준)

※ 생년월일 1982. 01. 02 ~ 2004. 01. 01 출생자

- 채용된 기업 소재지로 3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청년

□ 제외대상

○ 참여기업 제외대상

- 임금체불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신규2유형·3유형 참여 기업
- 2022. 1. 12. 이후 설립된 기업
- 국가 및 자치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

○ 참여청년 제외대상

- 최근 2년이상 연속참여한 참여청년(1년간 참여제한)
- 외국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 참여기업에 1년 이내 재입사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
-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청년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청년
- 청년 이전 직장이 현재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대상 근무형태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참여청년 허위근무 또는 급여돌려받기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 평가절차

- 1차 적격여부 : 기업(청년), 업종 등 제외대상 여부 판단
- 2차 정량평가 :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평가기준	세부평가	배점	비 고
참여기업 재정건전성 (60점)	· 참여기업 매출액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5	
	· 참여기업 매출 증가율 (19년~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5	
	· 참여기업 직원수 (4대보험 가입자명부)	15	공고일 이후
	· 참여기업 고용증가율 (19년~21년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5	19년~21년 12월31일 기준
참여청년 고용수준 (30점)	· 참여청년 임금수준 (근로계약서 임금수준)	20	시급제일 경우 209시간 산출
	· 참여청년 채용조건 (정규직여부)	10	
사업취지 (10점)	· 참여청년 전입여부 (공고일 이후 타도시전입)	10	
가 점 (20점)	· 경북도지사·시장·군수 인증기업 (PRIDE기업·우수기업· 이달의 기업 등) · 참여청년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20	각 항목당 10점, 최대20점
감점사항(-50)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50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간 이 2년 초과한 기업	-20	· 이전 사업을 통해 참여 청년 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이전 사업 참여중 6개월이내 참여청년의 중 도포기이탈자 2회 이상한 기업	-10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속참여한 청년	-20	

- 선정심의 : 운영위원회를 통한 최종선정 심의
-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참여 기업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업종코드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1부	업종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
	3	재무제표(2020) 1부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1) 1부	
	5	고용보험가입증명서(2019~2021) 1부	- 12월 31일 기준
	6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4대 보험완납 증명서 1부.	
	9	가점관련 서류	
참여 청년	10	근로계약서 1부	
	11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지 포함) 1부	
	1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1부	
공통	13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14	지원사업 동의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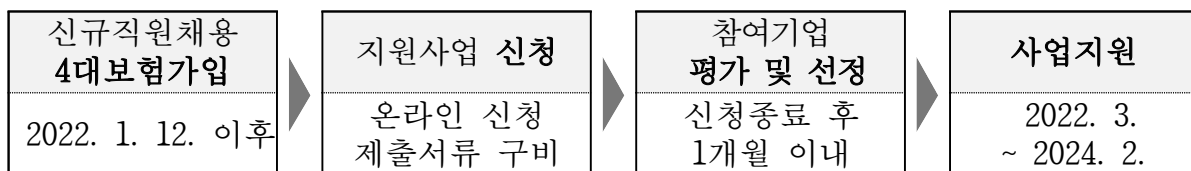
※ 서류 발급처 및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1일 ~ 3월 29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major.gepa.kr>)

□ 신청절차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 (☎054-470-8502, 8523)

□ 참여기업 유의사항

1. 근무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즉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통보하며 대체청년을 1개월 이내 신규채용하여 대체신청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원사업 내용을 참여청년에게 설명해야 한다.
- 참여청년의 자진퇴사 또는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유지된다.
- 참여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받기 전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원취소
- 지원기간 중 6개월이내 참여청년 퇴사(중도포기)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2. 현장점검

-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대표자 또는 참여청년 가족관계증명서 등)
- 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

3. 지원금

- 참여청년이 자진(개인사정 등)으로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남은 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 가능
단,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공백 기간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분기 등)
- 지원금은 참여청년의 급여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수령액의 90%(최대 180만원)를 지원한다.
- 참여기업이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은 반환 조치된다.
- 참여청년이 지원금 지급 관련, 만근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임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현금지급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음.

□ 참여청년 유의사항

1. 주소

- 참여청년은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참여기업 소재 시·군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이전하고, 지원기간 동안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한다.(단, 해당 시·군장이 주소이전 불가(보류)승인 할 경우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지역정착지원금은 참여기업 소재 시군에 참여청년의 주소지가 등록된 시점부터 지급된다.

월별(1일기준) 만근(휴일포함)될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만근이 되지않은 월은 지급되지 않는다.

2. 지원 제외

-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을 추후 동일사업장에 대체인력으로 입사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 경고 및 제외

1. 경고

- 참여기업이 장기간(4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을 경우
-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 참여기업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사업 관련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제외

-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이 추후 동일한 사업장 혹은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권고사직 등)
- 참여기업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참여청년이 사업장 소재지로 주소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어긋난 경우 등

□ 기타사항

-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청년 채용과 관련된 행·재정적인 모든 사항 등은 참여기업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상기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붙임 1.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업종 분류표 1부.
2. 지원사업 확인서 1부.

산업명	산업분류코드 (5자리)*	업종코드 (6자리)**	산업분류명
지능형 디지털 기기	C26211	321005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C26291	321013	전자축전기 제조업
	C26295	321016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C26422	322004	이동전화기 제조업
	C27112	331100	전기식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99	33110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C28119	311006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C28121	31200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C28202	314000	축전기 제조업
	C30332	343004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C26219	321007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C26293	321015	전자카드 제조업
	C26294	311001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C26299	32100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429	322005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519	32300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7212	331204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5	33120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C28123	312000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C28519	29300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C28901	319003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첨단 신소재 부품가공	C20202	241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4121	271204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C24199	271201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C25912	28910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C25913	289103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C25914	289104	그 외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C25921	289206	금속 열처리업
	C29294	29290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C20203	2413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C24122	271205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C24222	272300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C24229	27230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C24329	27320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C25911	28910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C25922	289207	도금업
	C25924	289205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C25929	289201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C29222	292205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C29224	292206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C29292	292906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C30320	34300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C30391	343005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C30399	343000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친환경 융합 섬유소재	C13104	171105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C13213	171109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C13219	171116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C13409	171203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C13992	172903	부직포 및 펄트 제조업
	C13994	172905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C13999	172902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C23995	269905	탄소섬유 제조업
	C29261	29260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C13103	171101	화학섬유 방적업
	C13211	171115	면직물 직조업
	C13221	17210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C13222	17210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C13223	172106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C13224	172103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C13229	17210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C13402	171200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C13993	172904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C20501	243000	합성섬유 제조업
	C20502	243001	재생섬유 제조업
	C22299	25290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9269	292600	기타섬유, 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라이프 케어뷰티	C10211	15120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C10302	151304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C10742	15450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C10797	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C20423	242403	화장품 제조업
	C20499	24290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102	242305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	242301	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220	242302	한의학약품 제조업
	C21300	24230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C10212	151200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C10213	15120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C10219	15120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C10301	151301	김치류 제조업
	C10309	154804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C10741	154503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C10743	154502	장류 제조업
	C10749	15450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C10751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
	C10792	154905	차류 가공업
	C10793	154907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C10794	15490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C10795	154906	인삼식품 제조업
	C10799	15490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C20421	242404	계면활성제 제조업
	C20422	24240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C20424	242405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C20492	242904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C20493	24290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에서 우선확인 후 없을 시 ** 항목 확인

* ‘공장등록증’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조회’ 에서 확인 가능

** ‘홈텍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에서 확인 가능

붙임 2 지원사업 확인서

참여 기업 확인서

기업명		대표자	
업종		전화번호	
소재지			

본 사업장은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해당여부는 여, 부 중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여, 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신청 여부 ※ (현재 참여 중 기존 사업명 기재 :)*	여, 부
*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 참여는 예외 인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발생	여, 부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여, 부
소비·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여, 부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여, 부
공기업,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여, 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여, 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여, 부
최근 1년 이내 상기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상기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의 채용 여부	여, 부
인위적 감원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여, 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여, 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여부	여, 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	여, 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를 채용	여, 부

2022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